

제223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복지가족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검 토 보 고

### I. 제안경위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 2020년 5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20년 5월 2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II. 2019회계연도 결산

#### 1. 금천구 결산 총괄

##### 1) 2019회계연도 결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C=A-B)
합 계	608,956,891,780	643,165,476,064	502,826,173,013	140,339,303,051
일반회계	590,784,761,780	624,730,328,780	495,030,500,653	129,699,828,127
특별회계	18,172,130,000	18,435,147,284	7,795,672,360	10,639,474,924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 결산액은 6,431억 6,547만원이며, 총 세출 결산액은 5,028억 2,617만원을 지출하였고, 결산상 잉여금은 1,403억 3,393만원임.

##### 2) 결산상 잉여금 현황

(단위 : 원)

회 계 별	결산상 잉여금 합계	이월액		보조금집행잔액 (실제반납금)	순세계잉여금
		명시	사고		
합 계	140,339,303,051	39,127,143,040	13,704,099,780	8,026,609,780	79,481,450,451
일반회계	129,699,828,127	37,454,225,040	12,723,976,240	7,998,449,760	71,523,177,087
특별회계	10,639,474,924	1,672,918,000	980,123,540	28,160,020	7,958,273,364

-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규정에 의하여 2019년 결산상 잉여금 1,403억 3,393만원 중 명시이월액 391억 2,714만원, 사고이월액 137억 409만원, 보조금 반납금 80억 2,66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94억 8,145만원임.

### ○ 순세계잉여금 처리현황

(단위 : 원)

회 계 별	계	기편성예산	추경재원조정액	비 고
합 계	79,481,450,451	33,915,547,000	45,565,903,451	
일반회계	71,523,177,087	27,394,000,000	44,129,177,087	
특별회계	7,958,273,364	6,521,547,000	1,436,726,364	

- 2020년도 예산에 기편성된 일반회계 273억 9,400만원과 특별회계 65억 2,154만원을 제외한 455억 6,590만원이 2020년도 추경재원으로 조정가능한 금액임.

### 3)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액	지출결정액(A)	지출액(B)	이월액(C)	지출잔액(D=A-B-C)
합 계	25,615,418,000	1,680,667,000	964,170,830	693,000,000	23,496,170
일반회계	23,048,065,000	1,680,667,000	964,170,830	693,000,000	23,496,170
특별회계	2,567,353,000	0	0	0	0

-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5,615,418,000으로서 『효율적인 청사관리 사업』 외 9건으로 16억 8,066만 7천원을 지출결정하여 9억 6,4170만원을 지출하고 6억 9,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349만 6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함.

#### 4) 기금결산 총괄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계	12,371,868,290	1,324,402,495	7,521,703,895	6,197,301,400	13,696,270,785
자활기금	1,128,359,200	△165,012,840	45,667,160	210,680,000	963,346,360
노인복지기금	346,364,180	2,790,280	7,590,280	4,800,000	349,154,460
양성평등기금	394,744,960	1,992,980	7,342,980	5,350,000	396,737,940
청년미래기금		500,000,000	500,000,000		500,000,000
재난관리기금	3,231,094,660	444,675,340	735,136,530	290,461,190	3,675,77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1,017,042,810	35,831,420	146,677,990	110,846,570	1,052,874,230
도로굴착복구기금	1,606,521,260	26,468,810	1,278,770,940	1,252,302,130	1,632,990,070
중소기업육성기금	2,961,857,400	500,607,080	4,586,097,080	4,085,490,000	3,462,464,480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423,979,920	52,514,335	56,451,335	3,937,000	476,494,255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294,364,200	△39,126,380	22,351,550	61,477,930	255,237,820
식품진흥기금	967,539,700	△36,338,530	135,618,050	171,956,580	931,201,170

-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은 11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23억 7,186만 8천원에서  
 당해연도 사용액은 61억 9,730만 1천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36억 9,627만원임.

## 2. 복지가족국 결산 총괄

### 가. 복지가족국 세입 총괄

(단위: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세입결산액(B)	징수율 (B/A)
계	199,339,763,000	201,121,324,120	200,986,813,880	99.9%
복지정책과	5,942,972,000	5,951,166,950	5,951,166,950	100%
복지지원과	38,685,180,000	39,036,758,900	38,998,085,470	99.9%
어르신 장애인과	82,046,148,000	82,350,007,560	82,254,174,540	99.8%
여성가족과	58,475,878,000	59,476,329,680	59,476,329,680	100%
아동청년과	14,189,585,000	14,307,061,030	14,307,057,240	99.9%

### 나. 복지가족국 세출 총괄

(단위:원)

부서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집행률 (B/A)
계	262,794,937,540	250,454,362,455	5,967,508,340	3,035,999,439	95.3
복지정책과	11,802,506,000	11,154,046,710	9,236,000	360,246,450	94.5
복지지원과	45,293,531,000	43,324,390,860		537,692,558	95.6
어르신 장애인과	109,504,151,980	104,520,045,428	3,440,887,340	841,785,367	95.4
여성가족과	77,774,187,610	73,399,230,604	2,517,385,000	1,080,763,406	94.3
아동청년과	18,420,560,950	18,056,648,853		215,511,658	98.0

○ 2019 회계연도 복지가족국 세입 결산액은 2,009억 8,681만원으로 금천구 세입 결산액 대비하여 31%임.

○ 복지가족국 소관의 예산 현액 중 지출액은 2,504억 5,436만 2천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지출의 약 49.8%의 비율이며 복지 분야 지출액이 우리 구의 매우 높은 비중으로 매년 증가되는 추세로 사료됩니다.

#### 다. 집행잔액(불용액)

○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원)

부서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	사유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산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계	262,794,937,540	3,035,999,439	1.16	313,298,410	55,189,730	864,671,724	1,802,839,575
복지정책과	11,802,506,000	360,246,450	3.05	5,793,400	1,724,670	224,700,070	128,028,310
복지지원과	45,293,531,000	537,692,558	1.19	1,500,000	0	77,948,340	458,244,218
어르신 장애인과	109,504,151,980	841,785,367	0.77	300,000,000	30,745,510	157,682,682	353,357,175
여성가족과	77,774,187,610	1,080,763,406	1.39	1,005,010	21,465,400	253,403,556	804,889,440
아동청년과	18,420,560,950	215,511,658	1.17	5,000,000	1,254,150	150,937,076	58,320,432

○ 복지가족국 집행률 저조사업

(단위: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액(가)	지출액(나)	이월액(다)	집행잔액 (가-나-다)	집행률 (나/가)
복지정책과	계	5,810,000	16,600	-	5,793,400	0.29%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교육청)	2,810,000	16,600	0	2,793,400	0.59%
	재해구호 관리	3,000,000	0	0	3,000,000	0%
복지지원과	계	1,154,904,000	76,560,780	0	1,078,343,220	6.63%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843,714,000	9,800,000	0	833,914,000	1.16%
	자활장려금	301,190,000	61,892,780	0	239,297,220	20.55%
	무연고 사망자 관리	10,000,000	4,868,000	0	5,132,000	48.68%
어르신 장애인과	계	6,691,893,530	2,886,292,040	3,318,644,340	486,957,150	43.13%
	경로당 신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462,000,000	195,000,000	267,000,000	0	42.21%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등 지원	103,718,000	70,755,850	0	32,962,150	68.22%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	5,681,940,530	2,533,936,190	3,051,644,340	96,360,000	44.60%
	독신동분소 보건지소·데이케어 센터 설치(병설형)	300,000,000	0	0	300,000,000	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44,235,000	86,600,000	0	57,635,000	60.04%
여성가족과	계	2,530,184,000	295,415,000	1,987,845,000	246,924,000	11.68%
	보수교육비	14,541,000	6,060,000	0	8,481,000	41.68%
	방과후 보육료	27,643,000	11,300,000	0	16,343,000	40.88%
	출산장려문화확산	390,000,000	267,900,000	0	122,100,000	68.69%
	구립금주어린이집 대체신축	1,980,000,000	0	1,980,000,000	0	0%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사업	18,000,000	10,155,000	7,845,000	0	56.42%
	금천글로벌통합 복지센터 건립	100,000,000	0	0	100,000,000	0%
아동청년과	계	2,500,000	1,205,740		1,294,260	48.23%
	아동수당 사업홍보 및 운영	2,500,000	1,205,740		1,294,260	48.23%

※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출(집행률 70% 미만 사업)

- 복지가족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30억 3,599만 9천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1.16%임.
- 집행을 저조사업에 있어서 부서별로 집행률이 70% 미만의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 필요예산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예산이 편성·집행되도록 하여야겠으며, 복지가족국 정책 사업 14개 목표 중 성과 달성 12개, 미달성 2개 분야(긴급복지지원, 청년콜라보 공간 조성 추진)는 지속적인 사업 분석과 목표 달성을 위한 해당 부서의 면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3. 예산의 전용 및 이체 현황

#### ○ 예산전용 현황

(단위: 원)

구분	건수	전용금액	비고
계	16	156,632,000	
복지정책과	1	5,550,000	
복지지원과	2	3,790,000	
어르신장애인과	5	17,640,000	
여성가족과	7	126,652,000	
아동청년과	1	3,000,000	

-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복지가족국의 예산 전용은 총 16건 1억 5,663만 2천원을 전용하였음.
- 예산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사업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나, 당초 예산 편성한 목적을 벗어나 빈번하게 전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당초 예산 편성시 더욱 철저히 검토하고 가급적 제한 운용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예산이체 현황 : 해당 내용 없음



##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명시이월 사업 현황 : 19건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 산 현 액	원인행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 월 사 유
계			11,888,437	8,204,955	4,762,864	
복지 정책과	주 민 과 함께 하는 보훈회관 건립	사무관리비	24,000	18,610	5,236	[연도내지출불가] 보훈회관이'19.12.준공 예정으로사무실이전이 2020.1월로연기되어당해 연도내집행불가
		공공운영비	1,000		1,000	
		시설비	2,216,347	2,090,002	3,000	
어르신 장애인과	금천구 시니어클럽 운영	시설비	216,000	92,055	122,243	[집행시기미도래] 사 업 기 간 (2019.10.~2020.7.)인사업으로금천시니어클럽시장형사업장조성(2020.7.준공)예정
		시설비	20,000		20,000	[연도내지출불가] 시흥4동경로당12월매입, 독산2동경로당대상자확보중으로경로당2개소리 모델링비이월
	경 로 당 신설	자산및물품 취득비	217,000	195,000	22,000	
		기타자본 이전	225,000		225,000	
	금천 어울림 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4,795,090	4,010,673	1,999,000	[집행시기미도래] 공사기간이'19.2.~'20.5.인사업으로 명시이월후예산집행

부서명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 산 현 액	원인행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 월 사 유
여성 가족과	한솔키즈빌 어린이집 매입	시설비	197,000		197,000	[연도내지출불가] 한솔키즈빌어린이집민간매입('19.8.)후구립솔지어린이집폐지및통합운영('19.12.)됨에따라,학부모설명회및아동전원조치후'20.2.개보수공사시행예정으므로이월하고자함
		민간위탁사업비	97,000		97,000	
		자산및물품취득비	1,650,000	1,626,460	23,540	
	e편한세상 국공립전환	민간위탁사업비	240,000	170,000	60,000	[연도내지출불가] '19.11.준공으로입주자대표회의미구성되어장기수선충당금전액을이월코자함
	구립금주 어린이집 대체신축	시설비	1,770,000		1,770,000	[집행시기미도래] '19.하반기정밀안전진단결과(D등급판정)이후'19.11.28.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결과가통보되어,공사기간이'20.5.~12.로예정되어사업비전액을이월코자함
		감리비	30,000		30,000	
		민간위탁사업비	180,000		180,000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사업	사무관리비	600		600	[연도내지출불가] 하반기서울시공모사업으로사업기간이'19.10.~'20.2.이므로연도내집행이불가하여이월
		행사운영비	2,610		2,61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0	549	351	
		행사실비 보상금	5,890	1,606	4,284	

○ 사고이월 사업 현황 : 3건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 산 현 액	원 인 행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 월 사 유
계			5,662,940	4,629,743	1,204,644	
어르신 장애인과	금천 어울림 복지센 터건립	시설비	4,795,090	4,010,673	683,154	2020.5.28.준공예정으로추가공사대금 집행시기미도래
		감리비	685,850	589,490	369,490	
여성 가족과	육아중 합지원 센터운 영지원	시설비	182,000	29,580	152,000	현대지식산업센터1층임차기간 (~'19.12.19.)완료후공사진행이가능하여 연도내집행불가

- 2019회계연도 복지가족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른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은 총 19건 47억 6,286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음.
  - 사고이월은 총 3건 12억 464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 Ⅲ.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1. 세입결산 현황

(단위:천 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수납액 (라)	수납비율(%)
					다/가
계	1,389,530	1,964,430	1,449,502	410,960	104.3
의료급여기금	545,816	842,654	588,579	150,107	107.8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843,714	1,121,776	860,923	260,853	102.0

- 특별회계 부분에서 예산현액대비 실제 수납액 전체 비율은 104.3%이며 의료급여기금의 수납비율은 107.8%,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02%임.

### 2. 세출결산 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집 행 잔 액	
				금 액(C)	집행률 (B/A)
계	1,389,530	551,813	0	833,916	39.7
의료급여기금	545,816	542,013	0	2	99.3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843,714	9,800	0	833,914	1.1

-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집행률은 39.7%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집행 실적이 2018년도에 이어 2019년도에 전무한 실적으로 해당 부서는 면밀한 수요 예측 및 예산 집행으로 사업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IV.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 ○ 기금결산 현황

(단위: 천원)

기금명	조성액			사용액 (B)	당해연도말 조성액	비율 (B/A)
	전년도말	당해연도	계(A)			
합 계	1,869,468	560,600	2,430,068	220,830	2,209,239	9
자활기금	1,128,359	45,667	1,174,026	210,680	963,346	17.9
노인복지기금	346,364	7,590	353,954	4,800	349,155	1.4
양성평등기금	394,745	7,343	402,088	5,350	396,738	1.3
청년미래기금	0	500,000	500,000	0	500,000	0.0

○ 복지가족국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은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으로

- 전년도말 조성액은 18억 6,946만원이며
-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2억 923만원이고
- 당해연도 사용액은 2억 2,083만원임.

○ 복지가족국 소관 기금은 4개 기금으로 설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금사용실적이 매우 낮은 실정이며 기금별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파악하여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사용액 비중을 늘려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참 고 자 료

## ☞ 예산·결산 자료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 제134조(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0. 4. 30.] [법률 제16889호, 2020. 1. 29., 일부개정]

###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 8. 4.]

## 「지방회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회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감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기금 관련 자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0. 4. 30.] [법률 제16887호, 2020. 1. 29., 일부개정]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